

#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준칙 합의서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올바른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·사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용)

회사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·인력 등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한다.

### 제3조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,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.

### 제4조(효력)

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### 제5조(용어의 정의)

본위원회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으로 하고, 각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에 준한다.

- ① 회사측 위원 - 안전보건총괄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당연직 3인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

- ② 노조측 위원 - 위원장, 명예산업안전감독관, 노동자 대표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
- ③ 간사 -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노·사 양측 대표위원이 각각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

#### 제6조(운영규정의 심의)

본 규정은 위원회 심의 의결로 제·개정 될 수 있다.

### 제2장 위원회 구성

#### 제7조(구성)

본 위원회 구성은 회사측 6인, 노조측 6인으로 하여 총 12인으로 구성한다.

##### 1. 회사측 위원

대표위원 -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인

위원 - 안전관리자 1인

보건관리자 1인

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 2인

간사 - 안전관리주관 부서장

##### 2. 노조측 위원

대표위원 - 노동조합대표(노동조합 위원장) 1인

위원 -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자 1인

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

노동조합대표가 지명하여 위촉한 위원 2인

간사 - 안전관리담당자

#### 제8조(직무)

본위원회 위원장, 위원,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.

- ①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1/4분기, 3/4분기는 회사측이, 2/4분기, 4/4분기는 조합측이 맡는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·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.

- ③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상정, 의결사항의 집행점검 등 제반업무 외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.

#### 제9조(심의·의결사항)

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④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사항
- ⑤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
-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⑦ 안전보호장구 및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
- ⑧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
- ⑨ 유해·위험방지에 관한 사항
- ⑩ 산업재해 사후처리 문제(보상, 기타)에 관한 사항
- ⑪ 각종 안전회의체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
- ⑫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의 수, 자격, 직무, 권한 등에 관한 사항
- ⑬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- ⑭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노·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

#### 제10조(위원의 신분 보장)

- ① 회사는 위원이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며 제9조에 정한 직무수행과 조사활동을 보장한다.
- ② 회사는 노조대표가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임시상근 요청시 이를 보장한다.
- 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.
- ④ 회사는 노측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, 직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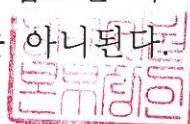
### 제11조(자료제시)

회사는 노조대표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 거부하지 못한다.

### 제12조(참고인 출석)

- ① 노·사 양측이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케 한다.
- ② 참고인으로 위원회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즉시 출석하여 성실히 의견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자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
### 제13조(참고인의 신분보장)

- ① 회사는 위원의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일로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.
- ② 회사는 위원의 조사활동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 및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 


### 제14조(시설편의 제공)

회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과 필요한 제반 장비 및 비품 등을 요청시 제공하며 기타 이에 따른 관련 유지비를 지원한다.

## 제3장 위원회 운영

### 제15조(회의)

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며, 별도로 노동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① 정기회의 -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.
- ② 임시회의 - 노·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 
- 중대재해 발생시

- 재해발생 및 재해위협으로 인한 작업 중지시
  - 위원장 및 위원 1/3이상의 소집 요청시
- ③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(이하 실무위원회) -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16조(회의소집 및 회의성립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,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7일 전까지 노사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선임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, 노사 대표 위원이 추천한 1인에 한해 대리참석 할 수 있다. 단 당연직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회의성립은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

#### 제17조(의결)

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과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한다. 단,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 후 양측 대표위원이 협의한다.

#### 제18조(부결시 조치)

회사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된다.

#### 제19조(회의록 작성 및 보존)

-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, 서명 · 날인한 후 노사 각 1부씩 갖는다.
  1. 개최일시 및 장소
  2. 출석위원 및 교체위원의 직위와 교체사유
  3.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

4. 회의내용 및 심의·의결사항
  5. 기타 토의 사항
-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.

#### 제20조(회의결과 공지)

본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신속,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.

#### 제4장 임무

##### 제21조 (심의·의결사항)

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9조에 의거한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.

##### 제22조(권한)

본 위원회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,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.

##### 제23조(권리)

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 전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대피 등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, 지체없이 직장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# 제24조(준수의무)

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 수용하며,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### 제25조(산업재해 발생보고)

-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7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,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인재개발부장은 이를 노동조합에게 알려야 한다.
- ②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,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1.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
  2. 조치 및 전망
  3. 그 밖의 중요한 사항
- ③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,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,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.
- ④ 사고조사에 노동조합이 참여 요청할 시,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

### 제26조(요양신청)

관리책임자는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기인하여 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, 해당 사안을 1차 검토한 후, 상황보고서, 본인 및 목격자 진술서, 소속장 확인서,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인재개발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노동안전보건 실무위원회

### 제27조(설치)

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실무위원회 (이하 실무위원회)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구성)

- ① 실무위원회는 조합측 2인, 회사측 2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사용자측 실무위원 - 안전보건업무담당 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중 2인
- ③ 근로자측 실무위원 - 노동조합 간부,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 2인
- ④ 간사 -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선임한다.
- ⑤ 당해 안건과 관련된 관리감독자를 필요시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.

제29조(운영)

노·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, 2일 이내 개최한다.

제30조(기타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018년 11월 20일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동조합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

본부장 정석찬 *정석찬*

지부장 김필성 *김필성*